

#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박우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8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9월 6일

발 의 자 : 박우근, 김규학, 김동식,  
김대현, 김성태, 김원규,  
김재우, 김태원, 김혜정,  
이시복, 이영애, 이진련,  
이태손, 임태상, 윤영애,  
장상수, 전경원, 정천락,  
홍인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,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, 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,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함(안 제3조)
- 나. 조성된 적립금은 세입의 보전,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 충당, 장기 시설투자 추진 등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교

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며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4조)

다. 기금 관리·운용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, 이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·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2. 기금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제6조의 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제6조의 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제4조(기금의 용도)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

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3.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(BTL)에 충당할 경우
4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우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교육감은 기금을 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7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정책지원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기금업무 담당부서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감채기금 운용계획”을 “기금 운용계획”으로 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「지방재정법」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재정안정화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

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